■ 민방위·화생방 장비 규모별 보유기준(2018년)

① 방독면: 민방위대원 1인 1개 기준

② 민방위장비 규모별 보유기준

		내구	민방위대원수(<mark>직장대</mark> , 기술지원대)							
장 비 명	동 별	" ' 연한	100명	100~	300~	500~	1,000~	3,000~	5,000명	
			미만	300	500	1,000	3,000	5,000	초과	
전 자 메 가 폰	통 2개당 1개	10년	2	4	6	8	10	13	15	
지휘용앰프	통 50개당 1개	10년	1	1	1	1	1	2	2	
응급처치세트	통 4개당 1개	3년	2	3	4	5	6	8	10	
환자용 들것	통 7개당 1개	5년	2	3	4	5	6	8	10	
휴대용조명등	통 3개당 1개	10년	4	6	8	10	15	20	25	
교통신호봉	통 5개당 1개	10년	2	4	6	8	10	12	14	

③ 화생방장비 규모별 보유기준 🖙 대원 100명 이상 직장대 해당

○ 화생방분대 장비 : 2012년 생산품까지 폐기(지정폐기:MARK-1, DS2)

구 분	확보기준	기술지원대 (1개대 20명 기준)	직장대 (1개분대 10명 기준)	비고
보 호 의	개인당	1벌	1벌	
탐 지 지	대 당	2개	1개	
오 염 표 지 판	대 당	8세트	4세트	
휴 대 용 제 독 기	대 당	6대	3대	
제독용액(DS2)	제독기당 2통	12통	6통	
해독제(MARK-1)	탐지반원당	1개		
제독키트(KD-1)	제독반원당	1개		

④ 2017년도 장비물자 성능검사 결과 조치사항

○ 일반방독면: '05년 생산품까지 전량 폐기 처리[일반방독면 만 구매]

- KSM 6685(삼공물산), SCA 123SD(산청)

○ K-1방독면 : '07년 생산품까지 폐기

※ 2010년 이후 생산품 구매금지(군인, 예비군용)

○ 국민방독면: 전량폐기(KS부적합)

◦화재용 정화통 : 직장, 동 자체 폐기(일반쓰레기)

※ 정화통 폐기업체 : 초심 031-319-9032